

電氣通信 측면에서 본 韓國經濟發達史

전기통신의 발달을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결부시켜서 고찰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金 柄 夏

계명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사 전공

한국사에 있어서 近代의 기점을 어느 때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의 爭點으로 남아 있지만 어림잡아서 우리나라의 電氣通信制度의 도입과 발달은 바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궤도를 같이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지난 100년간의 한국의 전기통신 산업은 자율적이거나 또는 수단기적 타율성에 의한 것이건 간에 우리 민족의 歷史와 喜悲를 같이 하여 왔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은 시련을 겪으면서 한국의 근대화 課程을 상징하여 왔지만 특히 광복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전기통신 산업의 발달은 또한 근대화를 촉진시켰다는 周知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전기통신의 발달을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결부시켜서 고찰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통신의 발달과 근대화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第2章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근대의 역사적 기반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 차

-
- 제 1 장 19세기 中葉의 社會經濟
 - 제 1 절 傳統的 社會의 動搖
 - 제 2 절 資本主義의 萌芽와 開化思想
 - 제 3 절 開港과 開化思想의 發展
 - 제 2 장 電氣通信 發芽期(1885~1905년)의 社會經濟
 - 제 1 절 帝國主義의 侵略과 社會經濟
 - 제 2 절 國際貿易과 國內市場
 - 제 3 장 民族受難期(1905~1945년)의 社會經濟
 - 제 1 절 日帝의 強占과 植民經濟의 性格
 - 제 2 절 土地調查와 米穀收奪
 - 제 3 절 兵站基地의 產業編成
 - 제 4 절 商品市場의 發達
 - 제 4 장 電氣通信의 試鍊(1945~1961년)과 克服期의 社會經濟
 - 제 1 절 植民地經濟의 遺產과 그 破行性의 清算
 - 제 2 절 인플레이션과 財政政策
 - 제 3 절 援助經濟의 戰災復舊 및 工業政策
 - 제 4 절 貿易의 發展
 - 제 5 절 農業問題와 農業政策

第1章 19世紀 中葉의 社會經濟

제1절 傳統的 社會의 動搖

19세기 중엽 우리나라에는 약 10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¹⁾ 세계의 모든 전통적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인구의 사망률은 높았고 평균수명은 짧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유아사망률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天然痘에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천연痘로 죽고 어떤 해에는 거의 全滅하는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²⁾ 총 인구중에서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³⁾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 왔는데, 19세기 중엽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농지 기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개량된 農法이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地主制도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科田法을 마련하여 收助權에 의한 토지지배를 재정립하였으나 시대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서 收租權에 의한 토지지배는 약화, 소멸되고 私的所 有가 확대되었다. 사적 소유의 진전은 지주제의 보급을 가져와서 농민의 80%이상이 小作農으로 전락하는 한편⁴⁾ 農莊도 한층 더 발달하게 되었다.

작농이나 소작농중에는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수입을 늘리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들은 자가 소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곡물을 생산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면화, 담배, 인삼 등의 재배는 상업적 농업으로 이루어졌다. 農業勞動은 가족과 미슴, 奴婢등이 담당하였지만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 농민층의 분화는 19세기 중엽에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富農들이 급성장하는 반면에 양반이 몰락하여 소작농이 되거나 임금노동

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과 토지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소작농가의 소득증대는 종래의 分半打作 으로서의 打租制이외에 定額地代로서의 賭租制가 보급되고 金納地代가 시행되던 지역도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상품 화폐경제의 급격한 발전의 진원은 大同法의 시행에 있었다. 대동법은 光海君 즉위년(1608년)에 경기도에 시행된 이후 1세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9세기 말의 甲午更張으로 地稅에 통합됨으로써 대동법은 폐지되었지만, 대동법이 시행되어 종래에 1役으로 부담되던 進上, 貢物등을 1結當 약 13斗로 田結에 추가 징수하게 됨으로써 유통경제의 합리화를 성취시킬 수 있었다. 잡다한 공물을 분산적으로 서울로 운송하는 것보다 米豆로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운송케하고 貢人을 통하여 官府의 용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상품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동미 납부에 화폐의 대납을 허용함으로써 화폐유통을 촉진시켰다.

조선전기에 있어서는 서울에 六矣廳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빌린 점포에서 특정상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였고 독점권을 부여받은 댓가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바치고 국고의 잉여물을 인수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國役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와서는 상품 유통의 양과 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동법의 시행과 더불어 貢人資本이 급성장하였고 非市廳

註：1) 第1次 統監府 統計年報에 의하면 1906년말 현재의 한국인 인구는 9,781,672명으로 되어 있으나 寡婦, 流浪民 등 통계에서 누락된 인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는 朝鮮敎會史의 저자인 다례의 추정에 따른다.

2) 다례 皆 李能植, 尹志善 共訛, “朝鮮敎會史 序說” 大成出版社, 1946년, 12면 참조.

3) 1909년에 있어서의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73.3%를 차지하고 있었다.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11년)

4) “景崇實錄” 元年 9月 申午修 참조

의 상인의 상업활동도 활발하였다. 육의전을 비롯한 일반 시전상인들은 그 대용책으로 정부와 결탁하여 전매 특허권인 禁亂塵權을 획득하고 동업조합(guild)을 조직하여 소위 亂塵을 단속하였던 것이지만,¹⁾ 비시전적 난전의 죽생은 亂塵團束권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는 자연발생적 場市가 번창하였다. 서울 鐘樓부근, 南大門밖 七牌, 梨峴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중에서도 칠판등의 私商都賈는 市塵徒賈를 암도할 정도로 자본뿐만 아니라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리고 京江商人과 開城商人등의 賣店賣惜은 시전상인의 상업활동을 위축시켰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안이하게 금란전권을 발급할수 없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비시전적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육의전 이외의 금란전권을 취소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正祖 15년(1791년)에 내려진 辛亥通共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육의전이란 6개의 限定品種店을 제외하고는 자유스러운 거래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상업에 대한 통제의 약화는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켰다.

이 시기에는 중앙의 도시 주변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지방에 있어서도 場市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장시가 조직되어 서구에 있어서의 週市의 기능을 다하였다. 장시는 직접적 생산자가 잉여 생산물 혹은 판매를 위한 시장적 생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전환시키거나 화폐의 형태로 이윤을 실현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장시는 하루에 왕래할 수 있는 거리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이는 곳으로 場市와 場市사이의 상품유통은 複雜商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기시장망이 갖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구실을 하면서 村落의 소비자들에게 비자급적인 상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일반 상인들의 직업윤리는 嘗利慾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매점매석을 한다든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이 일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자본을 지배하거나 직접 산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업자본을 축적한 京江상인이나 開城상인들은 造船業을 경영하거나 先貸制에 의하여 수공업자들을 지배하였다. 개성상인들은 都賈商業과 對外貿易을 통하여 축적한 자본을 인삼재배와 인삼가공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상품화폐 경제

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수공업부문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시켰다. 조선전기에 우세하였던 官營手工業은 이 시기에 와서 쇠퇴하고 民營手工業이 크게 발달하였다. 관부에서도 官需品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민영에 의한 수공업제품을 구매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었다. 그 결과 官匠들이 관부의 수공업장을 이탈하고 독립수공업자로 전환하여 주문생산 및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독립수공업자들이 성장하여 18세기 중엽에는 工場制 手工業의 경영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공장제 수공업은 鑄鐵業, 鍮器製造業, 軍器製造業, 製鐵, 製鋼, 製紙業등에 나타났는데, 특히 제철업에서는 대규모의 특권적 매뉴팩처어(Manufacture)가 형성되고 있었다.²⁾

이와 같은 농업과 상공업에 있어서의 변화는 19세기 중엽에 와서는 더욱 현저해졌다. 신분제도에 따라 土農工商의 직업적 우선순위에 대한 관념도 달라져 갔고 육의전과 보부상 등에서 조직되었던 중세적 길드(guild) 조직도 해이해져서 점차 길드의 해방을 초래하게 되었다.

第2節 資本主義의 萌芽와 開化思想

19세기 중엽에 있어서의 농공상업의 큰 변화와 신분제도의 동요에는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칠 줄 모르는 異樣船의 출몰과 중국의 아편전쟁등 국제정세의 변모를 알리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세에 대비하여 보수적, 봉신적 반동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마치 홍수를 몇 삽의 흙으로 막으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를바 “邪孽罪人”에 대한 엄벌주의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도들은 증가일로에 있었으며, 신분제도가 근본적으로 혼들리기 시작하였다. 憲宗 4년(1838년)에 내린 양반의 半民役를 금지령 같

註：1) 당시는 亂塵團束을 “亂塵친다”라고 하였다.

2) 劉 元東 “朝鮮近代經濟史研究” 一志社, 1977년, 제 10장 참조.

은 것도 신분제 변동에 대한 양반층의 반동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 가치관의 頽到에 따라 노비의 도망도 한층 현저하여졌고, 조정의 禁令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자유노동자를 고용한 금, 은, 동의 私採 행위가 일어났다. 신분제도의 동요에 의한 자유 노동자의 창출과 富益富하여 투자의 기회를 노리는 계층의 출현등 새로운 시대의 싹들이 여기저기서 움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870년대에 와서 특히 현저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사상면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英·日租 이후 꽃을 피웠던 實學思想은 일종의 봉건적 개량주의였고, 근대적 사상은 아니었는데, 1870년대에 와서는 실학사상의 전통을 이은 開化思想이 나타났다. 실학사상이 양반층에서 형성, 발전하였음에 대하여 개화사상은 中人層에 속하는 劉鴻基(大致), 吳慶錫등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異質性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오 경석은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관으로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각종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친구인 유 홍기에게 제공하고 함께 개화문제를 연구하였는데, 구입한 서적 중에는 “海國圖志”와 “瀛環志略” 같은 영향력이 큰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은 1850년 이전에 수입되었으나 당시는 개화사상과 연결되지 못하였었는데, 1870년을 전후해서는 오 경석, 유 홍기, 朴珪壽에 의하여 재평가되었고, 개화사상 형성에 크게 공헌하였다.¹⁾

유 홍기는 풍부한 학식과 높은 인격을 가진 한 의사로서 오 경석과 친분이 두터웠다. 두 사람은 서울의 北村에 거주하는 양반 자체 중에서 동지를 구하여 근대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한편 평양감사로 있던 박 규수도 형조판서겸 한성부윤이 되어 1869년 상경한 때부터 1876년 별세할 때까지 金玉均, 朴泳孝, 朴泳教, 徐光範등 젊은 엘리트들을 북촌의 齊洞에 있는 사제에 집합시켜 朴趾源의 문집을 강의하였고, 개화사상을 소개하였다. 그의 계몽활동은 우의정을 사퇴한 1875년 이후에 더욱 활발하였다. 그는 박 지원의 親孫으로서 실학사상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자연히 실학사상을 토대로 하여 개화사상과 개화파 형성에 교량적 구실을 하게 되었다.

오 경석과 유 홍기 선에서 싹터 가던 개화사상은 박 규수에 의하여 굳어졌고,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

로 성장하여 갔다. 오 경석은 중국어 통역에 능하여 10여 차례나 북경에 다녀왔고, 고종9년(1872년)에 進賀兼謝恩使가 파견될 때에는 正使인 박 규수의 수석 통역관이 되어 수행한 사실이 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개화에 뜻을 같이 하여 더욱 가까워졌다. 김 옥균과 박 영효 등 개화파 거물들은 제동의 박 규수택을 드나들면서 오 경석, 유 홍기등과 더욱 친해졌다. 이와 같이 1870년 대에 형성된 개화사상은 자율적 근대화의 조짐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 근대화의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第3節 開港과 開化思想의 發展

19세기 중엽에는 이와 같이 근대지향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 보수사상도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서양의 기술과 과학은 기독교를 수반하여 조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화 자체를 반대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풍조는 人院君執政期에 擾夷정책으로 더욱 강력해졌지만 대원군이 은퇴하고 閔妃 일파가 시도한 개혁운동은 대원군의 정치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근대화 작업은 아니었다.

衛正斥邪 사상은 유교의 정통성을 지키고 異端을 물리치려는 것으로서 반기독교, 반침략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반기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침략 또는 양자의 종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위정척사론은 개항과 더불어 비로소 대두되었던 것은 아니다. 반기독교로서의 위정척사론은 기독교의 보급과정에서 흔히 논의되었던 것이지만²⁾, 衛政 개항 이후의 위정척사론은 반침략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반개화가 주요한 목표로 되었다. 즉 衛政은 유교적 이념과 윤리도덕으로 유지되는 사회질서가 일단에 의하여 혼들릴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守舊하자는 것이고, 斥邪란 말은 擾夷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註： 1)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12-18면 참조

2) “勉庵集” 卷3 참조

1876년의 開港은 이와 같은 여건에서 『雲揚號』의 함포의 위협하에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것이 전통적으로 好戰視 되고 島夷視되던 일본에 의하여 강요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커진 것이다. 개항을 계기로 표면화한 근대적 가치관과 전근대적 가치관과의 갈등, 개화사상과 보수사상과의 갈등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인층에서 발생한 개화사상은 개항을 계기로 하여 하나의 사회적 조류를 이루었다. '守舊派'의 갈등 속에서도 개화파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항과 더불어 개화사상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880년대 이후는 국내의 신문이 사회계몽에 공헌한 바 커졌으며,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외국에 다녀온 인사들의 계몽활동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개화사상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전반까지도 개화파의 정치적 기반은 취약함을 면치 못하였다. 개화파 청년들에 의한 『明政變』은 일단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청의 간섭과 청을 배경으로 한 '守舊派' 세력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高宗 35년(1894년)의 갑오개혁은 일본의 영향하에 수행된 개화운동의 결실이었다.

개화파의 정치세력의 신장은 별문제로 하고 그 사이 개화사상은 꾸준히 발전하여 유길준에 의하여 집대성되었다. 1870년대의 개화사상의 촛점은 開國하여 해외 사정을 파악하는 데 있었음에 대하여 1880년대의 그것은 선진기술의 흡수에 의한 富國強兵論에 있었고 1890년대 이후는 民權과 완전 자주독립사상이 개화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개항 이후 개화파에 의한 계몽사상이 점차 요원의 불길처럼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화사상의 내용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문물제도의 수용양상도 변화하였다. 개항 이전의 개화사상은 청을 거쳐 들어왔고, 일본을 의식하지 않은 일방통행적인 것이었으나 개항 이후는 사정이 달라졌다. 즉 일본의 근대화에 주목하여 근대화의 모형을 일본에서 찾으려는 것이 개화파의 지배적 조류로 되었다. 개항에 있어서 기선을 제압한 것이 일본이었다는 객관적 정세의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른바 『壬子不平等條約』 당시부터 오 경석은 일본의 근대적 문물제도에 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김 옥균을 초청하여 일본의 근대화에 관하여 배울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

고,¹⁾ 특히 開化僧 李東仁은 개화파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동인은 고종19년(1878년)부터 일본인이 경영하는 本願寺 부산分院을 통하여 일본의 근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유홍기, 김옥균 등과 친분을 가져 개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대에는 1870년대에 조성된 기반 위에 근대적 부국강병론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나타났던 침략적 성격에 대해서도 인식이 깊어졌다. 예컨대, 고종25년(1883년)에 쓴 박영효의 上疏文에는 『萬國公法』과 국제적 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립자존하는 힘이 없는 나라는 열강에 의하여 침략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1890년대 이후는 이와 같은 외세의 국복과 완전자주독립의 전제로서 개화운동이 전개되었다. 1870년대의 개국론자와 1880년대의 부국강병론자도 자주독립사상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1890년대에 와서는 외세의 침략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완전 자주독립에 대한 민족적 자각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리하여 외세의克服과 완전 자주독립의 전제로서 개화운동이 전개되었고, 独立協會의 활동과 개화운동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외세의 위협을 극복하려면 근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근대화의 일환으로서 민권확립이 중요시되었다. 즉, 민주화가 錫如된 근대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第2章 電氣通信發芽期의 社會經濟(1885 – 1905년)

第I 節 帝國主義 侵略과 社會經濟

1-1 帝國主義의 侵略

18세기 중엽 이후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근대적 쌍이 움트고 있었지만 그 짙은 순조롭게 자랄여유도 없이 외국의 침략을 당하였다.

19세기 중엽 國美 선진국에 있어서는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鐵道, 氣船등 근대적 교통수단이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었는데, 한편 뒤늦게 개항한 일본은 절대주의적 明治 정부를 구심으로 근대화의 기반형성에 주력하면서 군국주의적 침략을 동시적으로 감행하였다. 즉, 일본은 西勢東漸을 이용하여 우리보다 근대화에 한발 앞섰을 뿐만아니라 그들의 국내문제가 일단락되자마자 近隣征服 정책을 택하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국제질서 하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鎮國政策으로써 대응하였던 것이지만, 결국 일본군함의 함포 위협은 개항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쇄국조선에 대하여 개항을 강요한 것은 일본만은 아니었다. 정조21년(1797년)과 純祖16년(1816년)에는 영국상선이 東來 龍塘浦와 馬梁鎮에 나타난 적이 있지만, 이때에는 탐험을 목적으로 했을 뿐 직접 개항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순조 32년(1832년)에 내항한 영국상선 로오드암허스트(Lord Amherst)호가 東印度會社로부터 파견되어 통상을 교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영국선박이 내항하여 통상을 요청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상선도 도래하였다. 현종 12년(1846년) 프랑스 해군 소장 세실 Cecille)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충청도 연안에 와서 현종5년(1834년)에 프랑스 신부가 처형된 것을 항의하

는 서한을 전하고 돌아간 것을 효시로 그 후 여러 차례 우리 연안을 침범하여 항의를 계속하는 한편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고종3년(1866년, 병인) 8월에는 로오스(Rose)가 군함 3척을 이끌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 揚花津을 침범하였고, 이 해 9월과 10월에는 江華島를 침범하였다가 격퇴되었다. 이 해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Oppert)도 영국 상선 로나호에 동승하여 통상을 요구한 바 있었고, 2년 후에는 다시 朝鮮에 상륙하여 大院君의 아버지 南延君의 무덤을 도굴하다가 격퇴 당하였다. 러시아 상선이 우리연안에 출현한 것은 고종5년(1868년)이었지만 통상을 요청한 것은 바로 전해였다. 즉, 고종4년(1867년)에 러시아 상인이 함경북도 慶興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종조 초기에는 그 이전 보다도 열강의 개항 요구가 한층 적극화하였다. 고종3년(1866년)에는 미국상선 제네럴 셔어맨号가 大連江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하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군민에 의하여 소각당하였다. 그리고 고종8년(1871년, 辛未)에는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가 군함 5척에 1천명의 해병을 싣고 강화를 침범하였다가 격퇴되었다.

이와 같이 대원군이 설정하던 고종도 초기에 구미 열강의 침범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정책에 따른 저항력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구미 열강은 중국 연해주를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일본 군국주의는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반기독교 정책의 일환으로 쇄국을 고집하였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 서양과의 통로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즉, 九洲의 長崎港에 한하여 화란 상인의 내항을 허가하고 있었으므로 “蘭學”이라 하여 그들을 통하여 서양의 医術등을 습득할 수 있었고, 서양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53년 미국 군함 페리(per-

ry)号의 도래를 계기로 1858년에는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1858년 이후 구미 열강과 맺은 통상조약 “最惠國待遇”와 “片務的 領事裁判權”, “5%의 從量關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평등조약이었고, 국력이 구미 열강 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德川幕府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1868년 維新 政府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明治維新 이후 일본은 절대주의 노선에 따라 殖產興業과 부국강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화 정책도 시행하였다.

서양의 경우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식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본은 자본주의가 확보되기도 전에 식민주의를 지향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倭冠와 임진왜란등의 영향에 의한 침략주의적 사상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개항 직후에 이른바 “征韓論”이 나오게 되었고, 국내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1876년 정월에는 운양호를 파견하여 침략의 제일보를 디디고 무력에 의한 개항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2월에는 江華島條約이 체결되었고, 7월에는 韓日修好條規附錄 및 貿易章程規則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셈인데, 일본은 이때 고의적으로 관세조항을 제외하였고, 최혜국대우와 편무적 영사재판권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평등조약을 체결시켰던 것이다. 구미 열강과의 통상조약에서 일본이 당했던 약점을 우리나라에 이전시키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無關稅通商條約을 체결시켰던 것이다. 이 조약이 개정된 것은 관세규정이 명시된 韓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던 다음 해인 1883년이었다. 10여년동안 일본은 무관세 상태로 교역했고, 무역을 통하여 축적된 자본은 일본의 산업화와 무력증강에 도움이 되었다.

일본은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육성되자 1894년에 清日戰爭을 도발하여 승리하였고, 1904년에는 露日戰爭을 일으켜 이김으로써 제국주의적 본성을 철저하게 드러내었던 것이다.

1-2 社會經濟의 變化

18세기 종업 이후에 나타났던 근대적 萌芽는 19세기 종업에 와서 한층 더 성장 하였고, 정신면에 있어서도 근대지향적인 개화사상이 나타났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지만, 개항 이후 사회경제의 변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심하였다. 개항과 더불어 점하게 된 다양한 機械製 상품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후 점차 도입된 전기통신제도와 시설은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전기통신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電信柱가 부설되는 지방의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무엇보다도 컸다고 말할 수 있고, 근대화의 물결은 전기통신제도의 보급과 비례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전기통신사업은 고종22년(1885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개설된 전신사업을 효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스가 電信機를 발명한 때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때였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전기통신기술과 시설면에서 높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19세기의 80년대에는 문명의 利器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다. 전기통신은 종래의 峯火制度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대중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9세기 문명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통신산업의 도입은 그리 순탄하지 아니하였고, 보급과정에 나타났던 대중의 충격이 그들의 생활개선과 직결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전기통신사업을 침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국제적 침략세력이介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16년(1883년)에 일본이 부산·長崎간 海低電線부설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년 후에는 清國이 인천·서울·義州간 전선부설권을 취득하였다. 1880년대 이후는 海關收稅權 朝·日輪船定期運航權, 魚業權, 鉄道부설권등 전기통신이외의 주요 利權도 외국인에 의하여 취득되었다. (外國人の 利權取得 現況은 표 2-1과 같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취득한 것은 일본이었는데, 그것은 일제의 침략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개항후 對日貿易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본선박의 출입이 활발해지고 우리 나라에 渡來하는 일본인수도 해마다 증가하였다. 청일전쟁 직후인 고종32년(1895년)에는 거류 일본인 수가 12000명이었는데, 노일전쟁 직후인 光武9년(1905년)에는 53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초기의 이주자 중에는 실업자였거나 일학천금을 노리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서울, 부산, 인천, 군산, 대전등지에 거주하면서 상업과 高利貸村業에 종사하였다.¹¹ 특히 典當舖는 일본인촌에 있어서 가장 번성하였던 업종의 하나였다. 전당포 경영자는 가난한 한국인에게 고리대부를 하고, 금리이외에 典當物流失

〔五2-1〕 外國人의 利權取得 現況

年度	利 權	利 權 取 得 者
1883	釜山 長寄 海底電線 敷設權	日本政府
1883	海關收稅權	日本 第一銀行
1885	巨文島 上海 海底電線 敷設權	英國政府 (淸國으로부터 取得)
1885	仁川 漢城 義州 電線敷設權	淸國政府
1885	朝·日 輪船定期運航權	日本郵船株式會社
1886	全羅道 稅米輸送權	獨逸 世昌洋行
1886	漢城 釜山 電線敷設權	淸國政府
1888	全慶 江·咸沿海三里 以内 漁採權	日本政府
1890	朝·日輪船定期運航權	日本大阪商船株式會社
1891	慶尚道 沿海 捕鯨權	日本 扶原海產會社
1892	貨幣 寶造原料 獨占提供權	日本 大阪製鋼會社
1996	京仁鐵道敷設權	美國 제임스 모울스

을 가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²⁾

청일전쟁이후 일제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토지 수탈과 농업이민의 수도 증가하였다. 개항 직후 거류 일본인은 개항지의 토지와 가옥을 임대하였다가 점차 염가로 매수하였지만, 청일전쟁 이후는 사정이 달라졌다. 즉, 개항지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일본인 지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리대의 결과 유실되어 일본인 소유로 된 토지와 소작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중소 지주들이 계획적으로 매수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대자본가들이 폭리를 노려 매수하는 토지가 많아졌고, 이와 병행하여 계획적인 농업이민의 수도 증가하였다. 예컨데, 細川이란 일본인은 광무8년 (1904년) 전주 일대의 토지매수에 착수하여 무근에서 1780정보를 소유하였다.³⁾

일제의 관심은 토지소유의 확장에만 있지 아니하였다. 식민지적 지배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와 더불어 금융의 지배가 선행되어야 했다. 고종15년 (1878년)에는 일본의 유력한 금융기관인 第一銀行 부산지점이 개설되었고,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자 그 곳에 出張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종25년 (1888년)에는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서울에도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 은행은 거류일본인에 대한 자금공급 이외에 金塊와 沙金의 매입, 海關業務, 發卷業務, 郵便換業務, 國庫金出納, 정부에 대한 借款 제공을 통한 재정적 지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규모는 이보

다 좀 작았지만 第十八銀行과 第五十八銀行도 잇달아 진출하였다.

일본인 은행의 진출에 자극을 받아 19세기 말에는 民族系 銀行도 설립되었다. 광무원년(1897년)에는 朝興銀行의 전신인 漢城銀行이 개설되었고, 동 3년 (1899년)에는 韓國商業銀行의 전신인 大韓天一銀行이 신설되었다.⁴⁾ 이 밖에도 몇개의 민족계 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자본이 빈약하였고 거대한 일본인계 금융기관에 놀려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인계 은행은 사세가 날로 번창하였는데, 그 중에도 제일은행은 광무6년 (1902년) 5월부터 발권업무를 시작하여 식민지적 금융기관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中央銀行의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고 降熙3년 (1909년)에는 韓國銀行이 설치되었으나 이듬해 國權이 侵奪되어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는 개항 이후 크게 변화하였지만, 貨幣制度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수반하였다. 조선후기에 유통되던 常平通寶는 고종28년 (1891년)에 평양에서 주조된 平壤錢을 마지막으로 발행이 정지되었으나 개항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었고, 외국인 居留地에서는 외국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다. 개항지에서는 일본의 円貨가 유통되었고 중국 상인들은 멕시코 弗銀貨와 馬蹄銀貨를 사용하였으며, 동북 국경지방에서는 러시아의 루우불 銀貨가 유통되었다. 이와 같이 가치가 다른 잡다한 화폐유통이 국민경제생활에 불편을 주었음은 누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고종20년 (1883년)에 典環國을 설치하게 되었고 점차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29년 (1892년) 新式貨幣條例를 발표한 것을 효시로 하여 전환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5兩銀

註：1) 예컨데, 서울 진고개 일대에는 典當局이란 간판이 집집마다 처마를 맞댈 정도였고, 典當業을 경영하는 일본인은 서울에 40호 정도인데, 그 고객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信夫淳平「韓半島」, 1901, 48면 참조)

2) 金炳夏「開港期 居留日本人과 그職業」慶熙大「論文集」7, 1972, 참조

3) 朝鮮企業案内「實業之朝鮮」1904, 64면 참조

4) 朝興銀行과 商業銀行 설립의 先後 관계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다.

「朝興銀行65年誌」朝興銀行, 1957, 215면, 「大韓天一銀行牒存案」韓國商業銀行, 1957, 2면 참조

貨, 1兩銀貨, 2錢銀貨, 5分赤銅貨, 1分黃銅貨등의 신식화폐를 주조하였으나 유통은 중지되었다. 이 때의 교환비율은 銀貨 5兩은 日本銀貨 1円, 白銅貨 2錢5分은 5錢, 黃銅貨 1分은 常平通寶 2文과 같았다. 그리고 2년 후에는 銀本位制를 채택하는 新式貨幣發行章程이 발표되어 5兩銀貨, 2錢5分白銅貨, 1分黃銅貨등이 발행되었다. 이때 2錢5分白銅貨를 교환비율이 상평통보 25분과 같았다. 素材價值에 비하면 名目價置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재정난 해결의 한 방편으로서 백동화를 남발하게 되었고 私鑄 백동화도 남발되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은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정부의 간섭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그 후의 사회적 혼란이 겹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광무 5년(1901년)에는 金本位制를 내용으로 하는 신화폐 조례를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노일전쟁의 발발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노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자 광무 9년(1905년)에는 日賀田太朗이 재정고문으로 와서 그의 영향 아래 광무 5년의 신화폐 조례의 보안을 내용으로 하는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때부터 전환국은 폐쇄되고 화폐의 주조는 大阪造幣局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화폐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된 셈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하였다. 근대적 화폐제도의 확립은 근대화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화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커던 것이다. 당시는 粗惡한 백동화가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惡貨의 不交換(無價値) 규정 때문에 도산자가 속출하였고, 음독 자살자도 있었다.¹⁾ 화폐개혁을 미리 탐지한 일본인들은 사전에 良貨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이 입은 손실은 더욱 커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80년대부터 20세기 초까지는 경제제도상의 격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시기에 典還局 이외에도 博文局, 織造局, 造紙局, 鑄務局 등을 설치하였고, 민간기업으로서는 鍤路織造社, 金德川織造工場등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민간기업은 아직 미약하였으나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기업가로 등장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인 것이다.

第2節 國際貿易과 國內市場

1-1 國際貿易

강화조약과 기만적 무관세 무역장정에 의하여 국제무역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은 1880년대에 와서 더 이상 무관세 무역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부딪혔다. 고종19년(1882년) 5월의 韓美修交通商條約에 이어 8월에는 韓清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었고, 다음해에는 결국 한일통상장정도 개정되어 해관세칙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그밖에 고종25년(1888년)에는 韓露通商條約이 체결되어 국제무역이 다변화하였고, 다음해에는 부산과 인천, 원산에 국한되었던 개항장도 확장되어 1880년대에는 서울, 함흥, 진남포, 복포, 평양, 군산, 마산이 개항되었고, 1900년대에 와서는 용암포와 청진, 신의주가 개항되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청국과 러시아의 진출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본의 막강한 무역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청국이었다.

1870년대 후반기에 대한무역을 독점하였던 일본은 주로 영국산 기계제 면직물과 염료등을 중계무역하고 우리나라의 곡물(쌀과 콩)을 수입하는 한편 귀금속을 반출하고 있었으나 고종19년(1882년)의 임오군란이후 청국세력이 강화되면서부터 청상의 진출이 증가하였고 청일전쟁 직전에는 일본과 백종지세에 도달한 정도로 무역규모가 확대되었다. 청국으로부터는 비단, 면직물, 모직물, 등 주로 섬유제품이 수입되었고 인삼, 쌀 牛皮등이 수출되었다.²⁾ 그리고 이 무역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중국인 거류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패배하자 정치세력에 비례하여 한일무역의 비중이 커졌고 중국인 거류자수는 감소되었다.

韓露무역은 규모에 있어서는 청국이나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었는데 노일전쟁이후 쇄퇴일로를 견제되었다. 이때 러시아로부터 면직물, 모피, 석유, 양초, 바늘, 성냥등이 수입되었고, 가죽과 곡물, 담배, 해산

註 : 1) “皇城日報”光武11년 7월 6일 참조

2) ‘韓國貿易史’韓國貿易協會, 1972, 115면 - 136면 참조

물등이 수출되었다. 수입품 중에서 면직물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것으로 별로 저항이 없었으나 석유는 러시아제품으로써 품질이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산 석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대미, 대영무역도 이루어져 석유를 비롯하여 洋紙, 약품, 기계등이 수입되었다.¹⁾

1 - 2 國內市場

부산이 개항되기 직전 倭館에는 40여호에 약 8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880년대 말에는 약 1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인 상사도 132사가 있었다. 이들 상사중에는 제일은행 부산지점과 日本郵船株式會社와 大阪商船株式會社, 부산지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의 개항장에 있어서도 일본상인의 진출이 현저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특히 인천에는 청국상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1880년대 초에는 영국의 장크루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청국상인의 거류자수도 날로 증가하였다. 清商중에는 同順泰와 같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무역상사도 있었으며, 京仁馬車公司와 같이 청국 관민의 출자로써 경인간의 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도 있었다. 그들은 인천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방면으로 진출하여 남대문과 水標橋 부근에 집단적으로 거류하기도 하였다.

부산이 일본 상인의 독무대처럼 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천은 청국뿐만 아니라 구미제국의 무역 균거지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천이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영국산 면직물의 집산지이며 청국의 관문이었던 上海 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사람 마이어(Edward Meyer)가 세운 世昌洋行(Meyer & Co.)은 일찌기 인천에 진출하여 紅參과 귀금속을 수출하고 면직물과 인쇄기계 등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상해에 균거를 둔 영국의 태화양행(Jordine Matheson & Co.-o.)은 인천에 출장소를 두고 牛皮貿易을 했으며, 일본의 長崎를 본거지로하는 영국계 咸陵加洋行(Homle Ringer & Co.)도 인천에 출장소를 두어 면직물, 밀가루, 설탕, 총포등을 수입하였다. 미국계의 陀基仙商會(Messrs Townsend & Co.)도 선박, 석유, 화학 등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 상회는 앞에서 본 세창양행, 함릉가양회와 더불어 1880년대 이후 크게 활약한 서양인의 기업체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외국상인의 진출이 현저하였던 1880년대 이후는 국내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무역의 발달에 따른 수출증대와 수출품의 물가상승, 그리고 수출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의 증대 등으로 국내의 유효수요는 증대되었고, 국내시장도 확대되었다. 외국상품에 대한 마아케팅 활동은 외국상인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시진상인과 보부상, 객주, 여객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개항지에 있어서의 일본상인의 활약도 개항지에 균거를 둔 청상들의 지방행상과의 제휴로 우리나라의 시진상들의 수입품 취급량도 많아졌으며, 특히 객주와 旅閣·보부상들도 그들의 조직을 이용하여 수입품의 판매와 수출품의 수집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註：1) The Korean Repository. V. 4 1897 pp. 444 – 참조 V. 4,

第3章 民族受難期(1905~1945년)의 社會經濟

第1節 日帝의 強占과 植民 經濟의 性格

광무9년(1905년) 9월 일본의 승리로 노일전쟁이 종결되자 일본 정부는 그해 11월 伊藤博文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第2次韓日協約(을사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일제는 보호라는 미명아래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약탈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는 자국의 과잉인구를 한국으로 이주시키고 한국시상을 지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일본인 거류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10년의 거류자수는 17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4년 전인 1906년의 83,000명에 비하면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본인 도래자수는 그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15년에는 30만명을 초과하게 되었지만,¹⁾ 인구이동에 비례하여 한국의 부동산과 상권이 잠식당하고 일제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민족경제를 유린하였다. 이 시기엔 산업혁명이 급진전하였으므로 일본상인들은 중계무역에서 이탈하여 자국상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적 가내공업은 일제상품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구미의 상품중에는 선박, 기계, 섬유 등 비자급적인 것이 많았음에 대하여 일제상품은 자급이 가능한, 즉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1910년 8월 소위 한일합병조약이 타의적,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이 해 10월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관제가 공포되었고, 일본국왕 직속으로써 육·해군 통솔권까지 부여된 총독이 통치하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와 통감부의 이중적 통치 기구가 일원화하여 명실공히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초대총독 李內正毅는 통감으로 있을 때부터 1911년 8월까지 일본 육

군장관(대신)을 겸임하던 者로써, 그에게 양대 중책을 겸임시킨 것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식민지 통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대가 한국에 침입하여 지속적으로 주둔한 것은 1896년 이후이다. 그들은 軍用電線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주둔하기 시작하여 뒤에 헌병대로 개편되었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데 동원되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헌병정치를 기간으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 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다. 식민지 최고 통치기구는 이 시기에 토지조사, 회사령, 금융제정제도의 개편, 철도, 통신망의 정비등에 의하여 식민지적 收奪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1919년 이후, 즉 거족적인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무단징치는 그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일제는 對韓愚民정책에서 일보 후퇴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내에서는 제1차세계대전중의 事端 끔과 식민지지배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급성장을 보게 되었고, 자본주의의 성장을 불황과 식량사정등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였다. 일제는 이와같은 국내문제를 식민지에 전가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產米增植計劃에 의하여 본국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키는 한편 일본의 유류자본을 식민지로 이동시킴으로써 일본 독점자본을 비호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투자의 저해요인이 되었던 朝鮮會社會을 철폐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배출구로써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赴戰江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 1930년에 조선질소비료공사 홍남공장이 완공된 것은 이와같은 사정에 기인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의 희생으로 성장을 거듭했던 일본경제는 1929년 10월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공황의 여파로 심한 불경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註: 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 1915 참조

일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대외침략에서 구하려고 하였다. 즉 1931년의 만주사변 도발을 필두로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였고, 1941년에는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미국에 도전하였다. 전쟁이 장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침탈정책도 달라졌다. 즉, 일제는 한국을 병참기지화할 필요가 생겼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재벌들의 진출이 현저해졌다. 예컨대, 三井系의 朝鮮麥酒公社와 三菱系의 昭和기린맥주회사, 野口系의 長津江수력전기공사 등이 이 시기에 세워졌던 것이다.

第2節 土地調査와 米穀收奪

1 2 - 1 土地調査

앞에서 본 바와같이 식민지 통치 최초기구에서는 침탈 정책의 기초작업으로써 토지 조사에 착수하였지만, 토지조사는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시도되었다. 즉, 광무2년(1898년) 7월 조정에서는 度支部에 量地衙門을 두어 토지조사를 시도했으며, 3년 후에는 地契衙門으로 개편하여 측량이 끝난 토지에 地契를 발급하는 등 부분적으로 토지 소유관계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광무8년(1904년) 8월 강압적인 제1차 한일 협약이 이루어지고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게 됨에 따라 사업의 주도권은 일제가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해에는 度支部 田稅局에 量地課를 두게 되었고, 광무 10년(1906년)에는 의정부에 일본인을 회장으로 하는 부동산법 조사회를 두어 토질가옥증명규칙, 토지건물전당집행규칙을 공포하게 하였다. 이것은 일본인의 토지 소유권과 전당유실의 합법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隆熙2년(1908년) 정위에는 임시재원조사과 量地課를 설치하여 왕실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게 하고, 7월에는 탁지부에 임시재산정리국 양지과를 설치하여 田宮庄土를 정리케 하였다. 즉 위와 같은 조치로 궁전과 종묘, 능묘 이외의 왕실 소유 부동산과 사궁장토가 국유화되었다. 이 무렵에는 일본인 이주자가 급증하던 때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들에게 토지소유의 축적을 보장하였던 것이었다.

이와같은 통감부시대의 부분적 토지조사는 식민지 최고 통치기구 시대에 와서 전면적 토지조사 사업

전기통신 측면에서 본 한국경제발달사 으로 되었다. 식민지 최고 통치기구는 토지 약탈, 민족침략적 농경의 확립, 토지의 貨幣化를 통한 本源的 壓積의 촉진등을 노리고 1910년부터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1918년까지 8년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과 가격 및 지형의 조사를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하여 2천여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1910년 12월 말 현재 23,998,420정보였던 농지가 1918년 말에는 43,920,900정보로 약 80%의 증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지적도와 근대적 측량법에 의한 한국지도도 완성되었다.

地價 조사는 지세부과의 기준이 되었는데, 조사자의 자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지역에 따라 일본인 조사자나 관계자의 토지가 있을 경우 지가를 낮게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

지가의 사정보다도 소유권의 분쟁은 일종 심각하였다. 토지소유에는 조상때부터 대대로 경작하는 농민적 소유와 조세를 납부하면서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적소유가 있었는데 이 때 소작인은 소유권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신고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때 부지한 농민은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국유지로 편입되거나 타인의 신고에 의하여 소유권이 박탈되는 예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때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2인이상이 소유권을 신고하여 분쟁이 야기된 경우도 있었고, 경계선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경우, 洞中·村中과 같은 공동체의 토지를 어떤 특정인이 단독으로 신고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 국유지의 부당한 판정때문에 발생한 분쟁이 속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국유지 편입에 따른 분쟁이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물의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토지조사사업은 일단 마무리 되었으나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는 일본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적국에

註： 1) 駅屯上ラン駅土·屯土·牧揚·竹田·柴揚·公解基地·陵園墓附屬地등의 총칭이다. 朝鮮總督府 「朝鮮小作農民에 관한調查」 1912, p30 참조

산재했던 駅屯士¹⁾ 이른바 국유지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의 소유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화해서 염가로 일본인에게 불하함으로써 일본인 지주들은 비대화하였다. 예컨대 1926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농지 및 산림은 악순환이라는 끌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 소작제도가 발달하고 소작인수가 많을수록 소작료는 유리하게 결정되며, 소작료로 수납한 곡물의 상품화 비율이 높아지면 곡 가가 하락하여 일본의 상업자본가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전 농가 호수의 3.4%에 지나지 않는 종래의 지주는 그대로 不在地主가 되어 전체 농지의 50.3%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를 부재지주는 근대적 농업경영자가 아니라 소작경영자로써 농업의 근대화와 거여하지 못하였다.

직접적 생산자의 대부분은 영세농민이었는데, 1918년 현재 소작농은 전체농가의 37.6%였고 자작겸소작농을 합하면 영세농의 수는 7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영세민 중에는 추수후 2, 3개월이면 절량하는 농가가 많아서 草根木皮로 인명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2 - 2 米穀增產政策과 農民의 生活

일본은 인구증가와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1인당 쌀 소비량의 증대로 말미암아 18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이 무렵에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쌀의 절대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본 각지에서 쌀 소동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1918년 8월의 쌀 소동은 규모가 커졌었는데, 그해 1월 東京의 米價는 석 당 23원58전이었으나 12월에는 40원58전으로 1년에 20원이 폭등하였다!

이와 같이 심각한 국내의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민지최고통치기구는 產米增殖計劃을 수립하였다. 산미증산계획은 農業水利, 土地改良, 未墾地開拓, 품종개량, 推肥獎勵 등을 통하여 쌀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이다. 그리하여 1920년 초에는 제1차 산미증식계획을 세워서 곧 실시하게 되었다.

[표 3-1] 年度別 쌀 生産量

	耕作面積(千町步)	收穫量(千石)	一町步當收穫量(石)
1937	1,639	26,797	1,635
1938	1,660	24,139	1,454
1939	1,235	15,356	1,243
1940	1,642	22,527	1,371
1941	1,646	24,886	1,512
1942	1,213	15,688	1,293
1943	1,517	18,719	1,234
1944	1,322	16,051	1,214

朝鮮銀行 調査部『經濟年鑑』1949. pp30~31

그러나 이 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1925년까지의 시장사업 중에서 준공된 것은 7만 1천 청보로써 예정면적의 58%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쌀 생산량은 1917년부터 1921년까지 연평균 1,410만 1천석이었음에 대하여 1922년부터 1926년까지는 가우 연평균 40만석이 증가되었을 뿐이었다.²⁾ 이와 같이 제1차 산미증식계획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에 있다고 하겠다. 즉 토지개량에 투자하는 것보다 쌀 농자를 구매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최고통치기구는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1926년에는 제2차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소기의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증액 시켰다. 그리고 1지구 200정보 이상의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식민지최고통치기구가 직접 공사의 설계와 감독을 하고, 200 정보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방청이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개간·간척사업은 주로 민간기업 부문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그 밖에 토지개량사업에 중점을 두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토지개량부를 설치하게 하고 새로 토지개량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식민지최고통치기구의 토지개량사업의 하청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도 제2차계획의 특징이다. 그러나 제2차 산미증식계획도 1930년대의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본토에서 米價暴落現像이 일어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

註 : 1) 中央報次郎「日本米価變動史」1933, 454면 이하 참조

2) 「朝鮮總督府統計年報」참조

3) 朝鮮總督府「朝鮮產米增殖計劃要綱」참조

2차계획기간 동안에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증대하여 1925년에 단보당 0.932석이 생산되었음에 대하여 1930년에는 1.153석으로 증가하였다. 수리조합도 123개소로 증가했으며, 경지면적은 1만 5364정보에 달하였다. 그러나 제2차 계획 역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1934년에 폐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일본의 불황으로 폐기되었던 산미증식 계획은 경기가 약간 회복되고 또한 일제가 전쟁도발을 시작함에 따라 재론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장기적 전시체제의 성립에 따라 군수미의 증가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40년에는 산미증식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단보당 쌀 생산량 1石2斗4升을 3석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에 태평양전쟁의 도발과 더불어 비상경제체제로 돌입하게 된에 따라 상기 10개년 계획은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전시에 있어서의 노동력 부족과 비료등의 부족으로 오히려 쌀 생산량은 감소현상을 빚게 되었다. (표 3-1 참조)

이와같이 식민지 최고통치기구에 의한 산미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시기에 있어서 대일 쌀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3-2 참조)

〔表 3-2〕 쌀 생산량 및 對日輸出

年度(5年平均)	生産量(千石)	指 数	對日輸出(千石)	指 数	1人當消費量
1917~21	14,101	100	2,196	100	0.6860
1927~31	15,788	111.9	6,607	300.9	0.4967
1932~36	17,002	120.5	8,757	398.8	0.4017

1917년부터 1921년 사이의 쌀 생산량은 연 평균 1,410만 1천석이었음에 대하여 1932년부터 1936년 사이의 그것은 1,700만 2천석으로써 약20%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대일 수출은 연 평균 219만 6천석에서 875만 7천석으로 증가하였다. 즉 거의 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수출량이 4배로 증가한 배후에는 한인의 생활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다. 끓거나 저효용의 곡물로 대체함으로써 쌀 수출의 증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0.86석에서 0.4017석으로 감소된 반면에 쌀의 과잉수출에 의해 야기된 식량의 부족은 선호도가 낮은 만주산 콩쌀을 수입해서 보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8년의 만주산 콩쌀의 수입량은 20만 5천석이었음에 대하

여 1933년의 그것은 104만 6천석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한 増米增植計劃은 그들을 자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화학비료공장이 건설되고 화학비료의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농민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고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920년 한국의 자작농가는 52만 9천호였으나 1932년에는 47만 6천호로 감소되었고, 자작겸소작농도 101만 7천호에서 74만 2천호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순 소작농은 108만 8천호에서 154만 6천호로 증가하였다. 즉, 12년 사이에 50만호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소작농이 지급하는 소작료는 놀의 경우 대체로 50% 정도가 物納이었고, 物納地代의 収納方法은 執租와 打租·定租로 구분되고 있었다. 집조는 매년 수확기에 지주와 소작인의 입회 하에 立稻를 조사하여 추정 수확량을 산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소작료를 협정하는 방법으로서 지세는 지주와 소작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종자 및 비료등은 소작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상례였다. 타조법은 打所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이 소작인과 입회하여 생산물을 탈곡·조제한 후에 이미 정해진 소작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서, 지세와 비료대는 소작인이 부담하며, 소작료는 보통 30~79%에 달하였다. 그리고 정조법은 소작료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일명 賭租라고도 하는데, 지세는 지주가 부담하고 종자 및 비료대는 대체로 소작인이 부담하였다. 도주의 소작료는 작물의 豐收과 관계없이 징수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20~79%였다고 한다.¹⁾ 그러나 소작료 수취율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930년 경기도에서는 定租의 경우 최고 90%부터 최저 25%로 되어 있었고, 타조는 70%부터 40%, 집조의 경우는 80%부터 30% 정도였다.²⁾ 평균하면 대체로 50% 였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말하는 25나 30%등은 最村等地의 소작율로서 종자대와 비료대, 제초비용등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결코 소작인에게 유리한 비율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작인들은 지주와의 소작료 협정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소작료 이외에 지

註：1)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上卷 15면 참조

2) 朝鮮總督府「朝鮮에서의 小作에 關한 參考事項摘」1933, 참조

주 가정에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연말연시에 무료로 봉사하는 일이 非一非再 하였다. 소작 이외에는 달리 생활 방법이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소작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소작농민은 소작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春窮期를 넘기기가 어려워 草根木皮나 막걸리찌꺼기, 쌀겨등으로 연명하는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1930년의 예를 보면 자작농의 18.4%가 春窮民이었음에 대하여 자작겸 소작농의 경우는 37.5%, 순소작농의 경우는 68.1%가 춘궁민이었다.¹⁾ 한국농민이 이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소작료에 기생하는 100정보 이상의 일본인 대지주는 순조롭게 성장하여 1921년에 490명에서 1927년에는 그 수가 553명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第3節 兵站基地的 產業編成

3-1 軍需產業과 日本獨占資本의 進出

1930년대의 經濟恐慌을 계기로 일본의 독점자본이 급격히 성장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은 이때 遊休資本의 배출구로서 지목되었다. 그리고 滿州事變과 中日戰爭, 太平洋戰爭 등 일제가 도발한 일련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장기적 군수산업 육성정책을 채택하게 되었고, 쌈 노동력과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에 우리 나라는 일본의 병참기지화하였다.

농업은 單一米作型으로 유지하면서 중요한 공업원료인 면화와 양모의 충산을 위하여 南線北羊정책을 채택하였고, 중공업 발달의 기초가 되는 鑛業開發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38년부터 產金 5個年計劃을 세우고 貴金屬 수집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발달한 것은 군수산업을 기간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1930년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20.7%로서 아직은 경공업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36년에는 33.2%로 상승하였고, 1939년에는 46.1%, 그리고 1943년

에는 49.5%로서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 공장 수도 이 시기에 있어서는 크게 증가하여 1930년의 4,261개에서 1943년에는 14,85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1940년 현재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대공장 수는 4.7%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30명 미만의 작은 공장이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있었다.²⁾

한국에 건설된 군수공장 중에서 중공업의 예를 보면 朝鮮重工業株式會社, 朝鮮機械製作所, 朝鮮製鋼所, 日本車輪株式會社, 昭和飛行機株式會社, 朝鮮理研金属株式會社, 東京自動車工業株式會社 富平工場 등이 있었고, 화학공업 부분에서는 輿南朝鮮塗素肥料工場, 朝鮮石油化學株式會社의 元山精製工場, 朝鮮塗素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 濟州酒精工場 등을 열기할 수 있다. 제주주정공장은 제주도의 주산물인 고구마를 강제경작·강제매수하여 그것을 원료로 알코올을 생산하였는데, 그것을 주로 군수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밖에도 군수공장은 많았고 半民需·半軍需工場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 진출한 독점자본을 보면 일본의 3대 재벌인 三井·三菱·住友를 비롯하여 日產·日鐵·鏡紡·東洋紡績 등이 확고한 지반을 갖추고 있었다.

3-2 社會間接資本의 拡充과 電氣通信產業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산업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기통신산업 자체가 사회간접자본에 속하지만, 이것은 침도라는 항만, 도로 등 그밖의 사회간접자본의 발달과 軌道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899년에 노량진부터 인천까지의 京仁線의 개통을 보게 됨으로써 철도시대의 밤을 열게 되었고, 1년후에는 한강철교가 완성되어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직통열차가 운행되었다. 1905년에는 京釜線의 개통을 보았고 1906년에는 京義線이 개통됨으로써 경부선과 연결되었다. 경부선과 경의선은 노일전쟁을 치루던 일제의 요구에 의하여 조급하게 건설되었던 것이다.

註：1) 久間建一「朝鮮農民의 近代의 樣相」1935, 32면 참조

2) “朝鮮經濟年報” 1939, 참조

1910년 10월 植民地最高統治機構(소위 朝鮮總督府)에 鐵道局이 설치된 이후의 우리나라의 철도망은 일제에 의한 침략의 수단으로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1914년에는 湖南線과 京元線이 개통되었고, 1928년에는 咸京線이 완공되었으며, 1936년의 全羅線에 이어 1942년에는 中央線의 개통을 보게 되었다.

國權이 侵奪되던 다음해인 1911년 10월 만주의 滿鐵線과 遺通列車權 規程을 協定하였고, 韓滿延結貨物通關手續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의 南人門과 만주의 長春사이에 週 3회의 직통 급행열차 운행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13년 6월에는 한국의 철도와 시베리아 경유 유령 제국과의 여객 및 화물연결운수를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철도체계는 대충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부산에서 만주의 新京, 奉天, 安東 사이에 「히끼리」, 「노조미」, 「아까쓰끼」 등의 급행직통열차가 운행되어 이용자도 급증하였다.

항만시설에 있어서는 부산항을 비롯하여 인천, 원산, 목포, 군산, 진남포 등이 일제의 필요에 의하여 근대적 면모를 갖추었으나 부산항을 제외하면 식민지적 國內沿岸就航선의 출입에 겨우 적합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던 것이다.

자동차운수 면을 보면, 우리 나라에 자동차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이다. 1903년 미국제 승용차 1대가 도입되어 高宗皇帝가 사용하였으며, 1911년에는 李 1職과 식민지최 고통치기구에서 각각 한대씩 구입하였다. 1912년에는 일본인이 택시 사업을 시작하였고, 1913년에는 어떤 일본인이 대구·경주·포항 사이의 不定期의 버스를 운행하였다. 그 후 각종 자동차 수는 점차 증가되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휘발유 소비 억제 정책을 강행하여 자동차의 연료를 솟으로 대체하게 하였다. 1945년 4월말 현재의 자동차 수는 승용차 1,311대, 트럭 3,639대 등 모두 7,326대가 있었다.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도로도 개선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도로 즉 新作路가 넓은 길이란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전통적인 좁은 길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도로에 비교하면 이 시기에 건설된 도로는 좁고 포장비율이 극히 저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지만, 한편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것은 전기통신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대화의 핵심이 산업화에 있고, 일차적으로는 그 기반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중에서도 투자된 자본에 비하여 효율이 높은 전기통신산업의 육성이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던 것이다. 고종25년(1888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덴마크 사람을 고용하여 경부간의 南路電信線의 준공을 보게 된 것은 관계자들이 전기통신산업의 필요성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1905년 4월 현재 서울과 부산, 목포, 의주, 경성을 연결하는 電信線網이 형성되었고, 각 도청 소재지와 주요 항구까지의 전신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일을 거쳐 국제적 전신망과도 연결되었다. 民族受難期에 있어서 의병의 항일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일제는 治安專用의 警備電話網을 확충하게 되었다. 특히 1907년 고종황제의 퇴위를 계기로 義兵이 봉기하게 되자 일본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警備電信電話建設部를 설치케 하고 그 관할하에 경비전신전화망을 형성케 하였다. 일제에 의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의 경비전용적 기능은 國權이 喪失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한편 관민공용의 전기통신 시설도 이 시기에 와서 계속 확충되었다. 예컨대, 電氣通信取及所는 1910년에 300여개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1943년에는 1,087개소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화도 약간 보급되었다. 전화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된 것은 전화기가 발명된지 22년만인 고종30년(1898년)이었지만, 1902년 광무6년(1902년)에 경인간에 通信院 경영의 전화가 개설됨으로써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점차 보급되어 광무9년(1905년)의 전화가입자수는 1,000여명이었으나 1945년에는 7만명으로 증가하였다.²⁾ 전국의 전화가입자수 7만명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며, 가입자 중에는 일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으나 전화가입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전화수요가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註 : 1) 通信部「電氣通信80年史」1966., 제 1 편 제 1 장 참조

2) 通信部「電氣通信80年史」1966., 제 2 편 제 3 장 참조

第4節 商品市場의 發達

교통·통신의 발달은 대규모 거래를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식민지의 유통구조를 本國의 그것과 일치시킴으로써 경제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던 일제의 계획이 실천에 옮겨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散買商이 대도시에서 보급되었고 買集商과 仲介商, 都買商이 특화하였다. 상품의 유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藥合市와 같은 전문대적 시장은 존립조건을 상실하여 갔고, 육의전이나 보부상, 객주제도도 기본적으로 길드(guild)적 속박에서 해방되고 면보를 일변하게 되었다. 5일 場市는 존속되었으나 시장 주변에 정주하는 상인들이 많아졌고, 점포를 가진 농촌도 점차 증대되어 갔다.

도시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큰 사업도시에는 公設市場이 성립되었다. 시민의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의 집단인 공설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된 것은 부산의 富平市場인데, 이 시장은 1910년 6월에 개설되었고 1915년 釜山市營으로 된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도시에서는 공설시장이 개설되지 않았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물가가 등락하게 되자 유통구조 개선책의 하나로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설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1년에는 6개의 공설시장이 신설되었고, 1938년에는 전국에 28개의 공설시장이 개설되고 있었다. 그 밖에 일본인 거주구역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私營 공설시장이 개설되고 있었다. 공설시장이 가장 발달한 도시는 부산과 평양이었고, 가장 규모가 큰 공설시장은 庄藏株式會社가 경영하는 서울의 東大門市場이었다.

서울의 인구는 1925년 현재로 약 29만7천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이 7만7천명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¹⁾ 서울은 상점가가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은행, 관청, 회사의 본지점이 있었고, 교육기관도 집중되어 있었다. 규모가 큰 백화점과 주식거래소도 서울에 있었다. 1924년 7월 현재 서울에는 6개의 공설시장을 비롯하여 4개의 柴炭市場과 3개의 魚市場이 있었다. 당시에는 장작과 숯, 낙엽등이 중요한 연료였기 때문에 柴炭市場은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는데, 敦義洞과 安國洞에 있는 柴炭市場이 유명하였다.

도시의 근대적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은 침

체하고 있었다. 농촌의 범주를 약간 벗어난 군청소재지나 읍·면사무소 소재지에는 상설점포와 상설시장이 서기도 하였으나, 순수한 농촌에서는 상품구매는 행상이나 5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부유한 지주의 공업적 수요는 行商人이나 場市, 또는 읍이나 도시의 시장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場市는 일제 시대에 있어서도 농촌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농민의 영세한 공업적 수요가 상시를 통하여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생산물의 貨幣化가 실현되고 使用價值를 교환에 의하여 現金化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계란을 팔고 고무신을 산나들이 등을 팔고 옷감을 사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 농민은 판매사업과 동시에 구매사이며, 생산사업과 동시에 소비자인 것이다. 당시 시장과 훈장을 순회하던 행상 중에는 開成 출신이 많았다. 개성을 본거지로 하여 전국 각지에 분산되었는데, 1924년 延壽에는 개성상인의 수가 2,3천명 이상이었다. 그들 중에는 보부상이 많았지만, 말에 상품을 싣고 다니는 상인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자기 계산 하에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상인도 있었고, 契人이라고 하여 주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자본의 공급을 받아 종속적 관계를 갖는 상인도 있었다.²⁾ 개성상인은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상호 부조와 상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1924년 경에 있었던 동업조합으로는 總理契, 日木契, 魚物契 등이 있었는데, 總理契의 規約을 보면 근대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길드(guild)의 菲儀社會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개성에는 朝間들이 조직한 博物契가 있었다. 박물계는 상품 중개상인 唐貨朝間과 금전 소개업자인 換錢店들이 배타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1924년의 박물계는 당화거간 86명과 환전거간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물계의 가입은 개성 거주자로서 신용이 있고 상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한다. 가입 신자는 계원의 소개와 부유층 2명의 보증서를 받고 종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성상인들은 독특한 開成簿記를 발명하여 사용하였고 그들 특유의 상업조직을 가지고 상업을 경영하였다. 그리하여 개성의 상권만은 일본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이권을 고수 할 수 있었던 것이다.³⁾

註： 1) 朝鮮總督府「朝鮮의 市場」1925, 243면 참조

2) 朝鮮總督府「朝鮮의 市場」1925, 11면 참조

3) 朝鮮總督府「朝鮮의 市場」1925, 136면 참조

第4章 電氣通信信產業의 試鍊과 克服期(1945~1961년)의 社會經濟

第I節 民族受難期의 遺產과 그 破行性의 清算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일제의 民族受難期經濟政策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영원히 종속시키고, 일본의 필요에 따라 특수산업분야에 있어서 공업화를 시도했던 皮行的인 것이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우리가 찾은 식민지경제의 유산은 자립경제의 토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自轉車는 고사하고 洋傘 하나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었고 총 인구의 57%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극소수의 지주를 제외하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의 70%가 소작농이었고, 자작농이라 할지라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그들의 생활 역시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따라서 국내시장은 협소하기 마련이고,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 겹쳤기 때문에 자립경제의 확립이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남북분단에 의한 자원 및 산업시설의 偏在를 가져왔고 피난민의 격증으로 인하여 인구의 압박을 크게 받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특히 주요 에너지인 전력과 석탄의 편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障碍가 되었다. 전력은 전체의 92%가 북한에서 발전되고 있었다. 남한은 겨우 7만9천5백kw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당시 남한의 전력수요는 40만kw 이상이었던 것이다. 1944년 현재 석탄은 북한이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567만8,855톤을 생산하였고 남한은 겨우 21%에 해당하는 143만8,860톤을 생산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밖의 금, 철광, 흑연 생산도 압도적으로 북한에 편재되고 있었다. 1936년 현재 금과 흑연의 70%이상이 북한에서 생산되었으며, 철광석은 99.9%가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도 북한의 편재는 현저하였다. 특히 남한의 농업지대와 연결되어야 할 興南窒素肥料工場은 북한으로 편재하여 한국의 농업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

하였다.

[표 4-1] 解方直前의 南北韓 電力比較 (1945년 現在)

	出力	比率	年平均發電力	比率
南韓	206,209	14%	79,500	8%
北韓	1,262,500	86%	909,200	92%
計	1,468,790	100%	988,700	100%

資料：朝鮮銀行「經濟年鑑」1949, 4면 (單位: Kw)

[표 4-2] 解方直前의 南北韓 石炭生產比較

(1944년 現在)

	生産量	比率
남한	1,438,860t	21%
북한	5,678,855t	79%
계	7,117,715t	100%

식민지경제의 고질적 유산의 하나로서 소작제도를 들 수 있다. 일제의 비인도적 토지조사사업으로 말미암아 균대화의 길을 걷지 못한 식민지 농업은 소작제도로써 상징되었는데, 광복 이후에도 소작문제는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농지개혁으로 발전하였다. 農地改革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 입각한 私有財產制度의 확정이라는 원칙 하에 有償沒收·有償分配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공포되었고, 그 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1950년 3월에 개정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地價償還額을 평년작의 150%로 하고, 지주에게는 政府保證의 企業資金으로 地價證券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매하는 농지는 自耕하지 않는 농지, 또는 최고소유한도 3정보를 초과 하는 농지 등으로 되어 있다.¹⁾

그리고 분배농지의 地價償還은 5년간 均分한 것을 年賦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물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배농지의

註 : 1) 韓國產業銀行「韓國產業經濟 10年史」1955, 전편 p53 - 60 참조

소유권이 지가상환의 완료된 후에 인정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농지개혁법의 제정과정에서 지주총의 강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린대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후 6.25동란과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지주총이 몰락하게 되었고, 미국 剩餘농산물의 도입으로 인한 협상가격차로 말미암아 농업의 상대적 침체를 면치 못하였으나 농지개혁 자체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던 것이다.

공업부문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술부족·자본부족·시장의 협소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지만, 특히 광복직후의 사회적 혼란은 제조공업의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찾은 歸屬業體는 총 공장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였다.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된 이후 농공균형의 산업국가 건설의 병침을 세우고 귀속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拂下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으나 6.25 동란의 勃發로 다시 민족적 患難을 겪게 되었다.

第2節 인플레이션과 財政政策

광복직후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과행적 산업 구조에 다른 생산의 부진은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다.¹⁾ 광복이 되던 1945년 말의 통화량은 현재의 화폐단위로 1,143 만원이던 것이 1946년 말에는 2,485 만원이 되어 연간 117%나 늘어났으며, 다음 해에는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 - 3] 通貨量 · 物價指數 · 年間變動率

	年未通貨量 (100만원)	서울都賣 物價指數	年間變動率 (%)	
			通貨量	서울도매물가지수
1947	50	100.0	100.0	81.8
1948	73	162.9	40.0	62.9
1949	121	222.8	72.9	36.8
1950	283	348.0	133.9	5.6.2
1951	730	2,194.1	158.0	530.5
1952	1,433	4,750.8	96.3	116.5
1953	3,032	5,951.0	111.6	25.35

資料：韓國銀行「經濟年鑑」

이와 같은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지

속되었다. 1947년의 서울의 도매물가 상승율은 81.8 %였고, 1949년에는 약간 하강했으나 36.8%란 높은 상승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1950년초에는 「경제안정 15원칙」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강력하게 실시된다. 그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6.25 동란의 발발로 말미암아 다시 악성 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1년의 서울 도매물가 상승율은 530.5%를 기록하였고, 이듬해에도 116.5%의 높은 상승율을 보여주고 있다. 量入制出을 원칙으로 삼아오던 정부는 신시에 있어서의 嶄人源의 畏避와 戰亂收拾費의 증가로 매년 직자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유엔군에 대한 貸与金도 크게 늘었다. 이와 같은 통화공급의 증가는 구매력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한 강제저축이 생산과 직결되지 못하여 섬유, 화학제품등 토산품 가격이 폭등하였다.

우리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한 때 제1차 세계大战 식후의 독일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악성화하였으나 파산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당시의 독일과는 여전히 달랐던 것이다. 인플레이션 수습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원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美軍政시대에도 있었고, 동란 당시와 휴전 이후에도 있었다. 그러나 양적으로 동란 이후에 외국원조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생산시설의 가동에 크게 작용하였으며, 소비재의 공급이 직접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1953년 2월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는 售券인 원화 예약 및 수표등을 유통기관에 신고하게 하고, 指定期間중의 생활비는 1인당 5만원을 100:1의 換價比率에 의하여 환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예입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체감율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일부 예입금의 봉쇄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진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註：1) 韓國產業銀行「韓國產業經濟 10年史」1955, 제3부
제2장 참조

第3節 援助經濟와 戰災復舊 및 工業政策

이른바 休閒安定期라고 하는 1954년부터 1960년 까지 우리나라는 평균 4.9%의 경제성장률을 성취하였다. 戰災 중에 이만한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피나는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 원조에 힘입은 바 컸다.

1950년과 1951년의 경제원조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였으나 경제원조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53년부터는 연간 2억 달러 수준으로 되었고, 1957년에는 3억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해에는 경제성장률도 8.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점차 경제원조가 감소되었고, 경제성장률도 1959년에는 4.4%로 둔화되었다. 도착 기준으로 본 원조액은 1958년의 3억2천만 달러의 수준에서 1959년에는 2억2천만 달러에 머물게 되자 재정은 세입에서 對充資金에 대한 의존율이 저하되고 국내 稅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財政赤字支出이 금융 면에서 저축성 예금으로 흡수되는 비중이 높아져서 통화량은 어느정도 안정적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통화공급의 불안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었던 것이다. 원조물자의 감소에 따라 1959년 하반기에는 年末對比 10.3%나 물가가 상승하였고, 통화공급도 32.6%의 증가를 보였던 것이다.¹⁾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우선 戰災복구에 노력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전기통신시설은 일차적으로 복구되었고, 이어서 철도, 항만, 도로등이 복구되었다. 특히 전력부문은 정부가 역점을 둔 복구사업에 속했다. 6.25동란에 의하여 가장 피해가 큰 것 중의 하나가 전력시설이었고 또 전력은 자립경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문의 복구에 서둘렀던 것이다. 남한의 전력시설은 6.25동란에 의하여 부산과 대구, 마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파괴되었으며, 한때는 釜山火力發電所에 의한 2,000kw와 부산항에 정박중인 발전선 Jacona호에 의한 14,000kw만이 可用發電施設이었다.²⁾ 그러나 휴전과 더불어 38선 이북에 속했던 화천발전소가 수복되었고 원조자금에 의한 화력발전소의 신설등으로 전력사정은 점차 호전되었다.

휴전 이후의 외국원조 및 内資에 의한 2차산업에 투자는 공업의 양적 성장을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1953년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공업의 구성비는 8%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1960년에는 13.6%로 증가하였고, 附加價值에 있어서는 13.83에서 32.98로 증가하였다.

〔표 4-4〕 2次產業의 構成比 (단위: 억 원)

	國民總生產額		2次產業		工業	
	附加價值	構成比 (%)	附加價值	構成比 (%)	附加價值	構成比 (%)
1953	172.10	100.0	21.01	12.1	13.83	8.0
1954	183.71	100.0	24.67	13.4	16.56	9.0
1955	194.49	100.0	28.95	14.8	20.02	10.3
1956	196.56	100.0	32.07	16.2	23.25	11.8
1957	212.45	100.0	37.03	17.3	25.34	11.9
1958	226.19	100.0	39.96	17.6	27.72	12.3
1959	237.10	100.0	44.62	18.7	30.36	12.8
1960	243.14	100.0	48.41	19.8	32.98	13.6

「商工行政概觀」 1958

1950년대 후반기의 외국원조에 의한 공업발전은 물량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요 공업구성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1957년 말 현재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면직물과 纖織工業 등이고 나일론방직공업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섬유산업에 이어 시멘트, 판유리, 자동차, 타이어, 신문용지, 합성수지제품, 精糖, 화약, 유황, 가성소다 공업이 이 시기에 대두하였고, 충주·호남의 양대 비료공장도 착공되었다.

철강 및 기계공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나 대한중공업의 鋼塊를 비롯하여 재봉기, 자전거, 전선, 전동기, 원동기, 공작기계, 방직기계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 1957년 말 현재 주요 공업부문의 생산기반을 보면 철강공업에 있어서는 연간 5만M/T 규모의 평균 1기를 가동하는 대한중공업 뿐이었다. 제철에 있어서는 日產 25M/T의 소형 용광로 8기를 설치하고 있는 삼화제철회사가 있었으나 휴업상태에 있었다.

註 : 1) 韓國經濟人聯合會「韓國經濟政策 30年史」1975, 876
참조

2) 韓國產業銀行「韓國產業經濟 10年史」1955, 255 면
참조

시멘트 공업에 있어서는 생산능력 10만M/T의 동양시멘트공장과 20만M/T의 문경시멘트 공장이 가동하고 있었고, 年產 13만 C/S의 인천판유리공장이 이 시기에 건설되어 가동되었다.

第4節 貿易의 發展

광복 직후 美軍政府의 무역정책은 식민지 최고통치기구 당시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1946년 1월에는 美軍政法令 제39호 對外貿易規則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주요 골자는 첫째 모든 무역은 군정청 또는 군정청이 지정한 자만이 할 수 있고, 둘째 수출입품의 수송은 군정청이 허가한 항공기와 선박, 차량만이 행하며, 세째 수출입은 군정청이 지정한 항구와 공항을 경유하며, 네째 무허가수출입품은 禁製品으로하여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 4월에는 그때까지 교통부가 海事행정의 일환으로 관장하던 세관행정을 재무부에 이관하여 稅關課가 주관하게 하였고, 7월에는 外國貿易統制令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외국에 있는 개인이나 정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갖는 수출입을 금지하며, 둘째 국내에 있는 개인이나 정치단체의 국내소재 재산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령의 목적은 교포소유 해외자산의 국내반입의 통제에 있으며, 특히 재일교포의 재산은 韓鮮銀行 지점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46년 10월에는 關稅令을 개정하여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최고율은 수입품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밀수의 提報者에 대해서는 상금 5만원을 한도로 하여 밀수출입품 가격의 25% 또는 별금의 25% 이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쌀의 밀수출에 대해서 初犯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9만원 이하의 별금, 再犯의 경우에는 그 2배의 형, 三犯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쌀이 당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47년 8월에는 새로운 대외무역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에서는 開港地로 인천, 부산, 군산, 북호, 제주, 김포공항등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

한간의 무역에 관해서는 선주가 주문권, 용호도, 여수의 3港 중 1港에서 세관에 신고하고 서류와 상품의 검사를 받게 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무역법 면허증을 발급받은 무역업자는 한국인 528명과 중국인 15명이었다.

이 해 7월에는 輸出入品價格查定委員會를 설치하고 가격기준은 홍콩의 時勢를 중심으로 하되, 수입품은 긴급물자일 경우 홍콩 시세에 운임과 비용 및 적정이윤을 가산하며, 最緊急物資는 이에 10%를 가산하여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법규가 연속적으로 세정된 것은 일제하에서 외국무역을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광복직후의 우리나라의 무역은 수동적인 物物交換의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산업구조의 脆弱性, 제도적 不備 등으로 광복 직후의 무역은 주로 외국상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정부보유 물자의 수출, 미군 당국에 의한 수출독점등이 정부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1949년 까지의 수출구조를 보면 海苔, 寒天, 생선등 수산물이 주종을 이루었고, 수입품으로는 식료품, 식물·금속류, 생고무, 油脂, 기계류, 차량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0년에는 정치, 경제의 안정과 무역 금융의 체계화 등으로 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6.25동란의 발발로 우리나라 항만에 있던 일본측 保稅 창고의 假輸出分이 긴급히 선적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전란 중에는 무역 활동이 거의 두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53년 8월의 정부수복을 기점으로 전재복구가 급진진되고 산업이 활기를 찾게 됨에 따라서 무역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즉 종래의 수입 위주의 무역에서 수출이 크게 늘기 시작하였다.

[表 4 - 4] 實質貿易依存度 (1955년 不變價格)

	1955	1957	1959
G. N. P(億원)	9,473	10,339	11,493
輸入額(億 원)	11,118	1,456	1,138
輸出額(億 원)	336	361	510
輸入依存度(%)	11.8	14.0	9.9
輸出依存度(%)	3.5	3.4	4.4

資料：韓國貿易協會「韓國貿易年鑑」

수출은 1955년의 336억원에서 1959년에는 51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의존도도 3.5%에서 4.4%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수입이 수출의 2배 내지 3배 더 많다. 즉, 特別外貨貸付弗이라든가 宗教弗, 政府保有拂下弗, 市中弗등 非輪出外貨에 의하여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향이 커기 때문에 수입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第5節 農業問題와 農業政策

식량과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농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다. 특히 농업 이외의 산업개발이 어려운 단계에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은 커진 것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우리나라 농업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최대의 농업문제였던 地主의 토지소유제도와 반봉건적 소작제도는 농지개혁을 통하여 해결하여 하였고,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면서 3정보를 상한으로 하는 自作農制가 창설되었다. 농지개혁은 일단 성공하였다고 하겠으나 그 후 小作的 借地農이 고개를 들었고, 농업경영의 영세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 당국은 농지개혁과 더불어 農業增產3個年計劃, 青產9個年計劃, 民有林造林10個年計劃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시켰으나 6.25동란의 발발로 좌절되고 말았다.

전쟁의 피해는 농업에 있어서도 커진 것이지만, 정부는 우선 전시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종래의 現金地稅法을 現物稅法으로 개정하는 臨時土地收得稅法을 1951년에 제정·공포하였다. 이것은 균량미의 확보를 위해선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 식량증산정책도 채택하여 1953년부터 米麥增產5個年計劃과 青產復興5個年計劃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해외로부터의 求護糧穀의 도입은 곡가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곡가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시책으로서 一般買上制를 실시하였다. 그밖에 이 시기에 있어서의 주요 농업시책으로서 砂防事業5個年計劃과 國有林造成5個年計劃이 1953년에 착수되었고, 1954년에는 제2차 民有林造成5個年計劃이 추진되었다.¹⁾

1953년 후반기부터 산업생산이 戰前의 수준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어 전시 경제는 부흥과 재건의 단계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3

년의 쌀의 풍작은 米價의 하락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정부는 米穀豫買制와 米担融資制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당시 문제로 되고 있던 立稻先買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미국의 원조도 求護 위주에서 부흥과 방위 위주로 변질하였다. 한가지 예로서 1955년 5월 한·미간에 협정된 PL450호에 의한 미국잉여농산물의 도입이 195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판매 대금인 對充資金은 한국의 국방재정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955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多事多亂하였다. 對日관계가 악화되었고, 서울 남대문시장에서는 자립 경제촉구 데모대가 외래상품을 파괴했으며, 한미환율이 500대 1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연간 物價騰貴率이 25%를 넘을 때에는 환율을 변경한다는 조건부의 단일 환율제였던 것이다. 1956년에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통화억제를 목표로 하는 財政金融安定計劃을 수립하였는데, 정부는 재정금융의 안정을 모색하면서 한편 식량을 비롯한 농업증산과 농가의 소득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였다.²⁾ 그리하여 1957년에는 農事院이 발족되었고, 1958년부터 農事增產計劃이 제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해에는 제2차 축산부흥5개년계획과 임업증산5개년계획도 착수되었으며, 農業銀行과 農協中央會의 발족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 農漁村高利債整理事業이 개시된 것도 바로 이 해였던 것이다.

1961년 7월에는 새 農業協同組合法을 제정하여 旧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였고, 水利組合도 개편하여 土地改良組合으로 발전하였다. 이듬해에는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이 수산협동조합으로 통합되었고, 농업원은 농업진흥청으로 발전적 개편을 보게 되었다.³⁾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여러가지 발전적 측면이 있었으나 경영의 영세성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1949년의 農家戶當 경영면적은 8.37 단보였음에 대하여 1960년의 그것은 8.69단보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율은 1949년

註： 1) 韓國產業銀行 “韓國產業經濟 10年史” 1955, 前編 第2부 제1장 참조

2) 韓國近代36年史 編纂委員會 “大韓民國近代 36年史” 1981, 1831면 참조

3) 全國經濟人聯合會編 “韓國經濟政策 20年史” 588 면 참조

의 71.5%에서 1960년에는 58.3%로 약간 호전되었으나 아직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주비료공장이 준공된 1961년 이전까지 화학비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여기에 소요된 외화만도 연평균 약 6 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시기에는 농약 사용도 일반화 되지 않아서 종자소독과 도열병 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銅製나 有機水銀劑를 1954년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김 병 하

필자 약력

1967년 일본 大阪국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1978~1983년

 미국 加州주립대학교에서 수학

1967~1977년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 경제경영사연구소장

1983년부터

 계명대학교 교수, 무역대학원장

 전기통신 100년사 집필위원